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10

발의연월일: 2021. 3. 30.

발 의 자: 백혜련 · 김경협 · 김철민

박광온 • 박성준 • 박홍근

윤관석 • 이병훈 • 임호선

전용기 · 한병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함.

이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등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죄의 경우 규정의 미비 로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고, 보전처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별표상의 중대범죄 목록에 대상범죄를 추가하여 입법공백을

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고자 함(안 별표 제47호, 제48호, 제4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47호, 제48호,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7.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죄
- 48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93조 및 제93조의2의 죄
- 49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제28조의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